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764
----------	-------

발의연월일 : 2025. 12. 2.

발 의 자 : 윤종균 · 김우영 · 문진석
진선미 · 신정훈 · 전용기
김태선 · 이기현 · 남인순
김태년 · 허 영 · 이광희
소병훈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직역연금(職域年金)은 총 4개로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이 있음.

현행법은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직역연금은 연금 간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경우에만 재직기간에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만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별정우체국직원연금도 직역연금의 일종이므로, 별정우체국 직원의 근무경력도 직역연금 간의 합산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을 공무원연금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균의원이 대표발의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61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62호)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을 “군인·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직원”으로,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본문 중 “포함한다) 또는 「군인연금법」 제38조”를 “포함한다), 「군인연금법」 제38조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27조”로 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으로, “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을 “군인·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의 직원”으로 한다.

제74조 전단 중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각각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으로, “국방부장관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국방부장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으로, “한다)은”을 “한다)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설립된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이하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93조제3항 전단 중 “「국민연금법」”을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국민연금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민연금공단”을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직기간의 합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및 제7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50조 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생략) ② 퇴직한 공무원· <u>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u> (이 법, 「 <u>군인연금법</u> 」 또는 「 <u>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u> 」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 <u>군인·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직원</u> -----「 <u>군인연금법</u> 」, 「 <u>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u> 」 또는 「 <u>별정우체국법</u> 」----- ----- ----- ----- ----- -----.
제26조(재직기간의 합산방법)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은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제65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 <u>군인연금법</u> 」 제38조에 따라 급여액에 제한을 받았을	제26조(재직기간의 합산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포함한다), 「 <u>군인연금법</u> 」 제38조 또는 「 <u>별정우체국법</u> 」 제27조-----

때에는 그 제한이 없는 경우에 받았어야 할 급여액으로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이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인 경우에는 연금인 급여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③·④ (생략)

제50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 연금의 지급정지)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근로소득월액”이라 한다)이 본인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월액만큼 해당 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50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 연금의 지급정지) ① -----

-----.

[illegible]

1. -----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군인·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의 직원-----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4조(연금액의 이체)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국방부장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한다)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설립된 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유족연금(제33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과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및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이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체금액의 산정방법 및 이체기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3조(공단의 권한 등) ①·② (생략)

③ 공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제50조에 따른 소득 등의 조사, 급여의 결정 및 지급, 급여의 환수, 학자금 대여 등 공무원연금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주민등록·가족

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이하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이라 한다)은-----「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

제93조(공단의 권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국민연금법」-----

관계등록·국세·지방세·토지 ·건물·건강보험·장애인등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u>국민 연금공단</u> 또는 기관·법인·단 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⑤ (생략)	----- ----- ----- -----. ----- -----<u>별정</u> <u>우체국연금관리단, 국민연금공</u> <u>단</u>----- -----. ④·⑤ (현행과 같음)
--	--